



[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] 개정 공포

□ 농림수산식품부는 유통단계의 축산물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영업 전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할 축산물판매업 대상에 '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'을 신설하고, 닭고기·오리고기의 포장유통 대상 영업자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 [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]을 2008년 5월 9일 개정·공포하였다.

-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영업신고 없이 유통·판매되고 있는 일부 축산물가공품에 대하여 제도적·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게 되고,
- 또, 포장 상태로 유통되는 닭고기·오리고기의 비율이 78%(도축물량 대비, 종전 42%)로 확대됨으로써 유통과정에 있는 축산물의 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

□ [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]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○ 닭고기, 오리고기의 포장유통 대상 확대

- 유통·판매과정에서 식중독균의 오염 방지, 수입육과 구별이 쉽도록 하기 위해 2007년 1월부터 우선 닭고기, 오리고기에 대하여 포장유통을 시행해오고 있음
- 2008년 6월 22일(시행령 시행일)부터는 포장유통 대상 영업자를 연간 1일 평균 도축수가 8만 이상인 도축업 영업자에서 5만 이상인 도축업 영업자로 그 대상이 확대됨
 - ※ 포장유통대상 : 닭·오리 도축장 18개소(이미 시행중인 5개소 포함)
- 2010년에는 모든 닭·오리 도축업의 영업자, 식육판매업의 영업자,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자까지 확대하여 닭고기, 오리고기의 포장유통을 전면 시행할 계획임

○ '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' 영업형태 신설

- 각 유통업체에서 자사브랜드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축산물가공품이 영업신고 없이 유통·판매되고 있어, 이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고대상 축산물판매업의 유형에 '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' 신설

※ ‘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’ 정의 : 축산물 (포장육·식육가공품·유가공품·알가공품을 말함)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타인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·판매하는 영업

• ‘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’에 관한 규정은

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하며, 이 영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함

※ 이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

〈별첨 1〉 이동제한지역 닭·오리농장 등 분뇨처리지침

현 행	개 정 안
부칙 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(2007.6.5) ② (경과조치) 이 고시가 시행되기 전 제조·수입한 제품의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 〈따로 붙임〉 제1.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정 8. 보존 및 유통기준 가.~마. (생략) 바.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의 보존온도는 냉장 제품은 -2~10℃, 냉동 제품은 -18℃ 이하에서 보존·유통하여야 한다. 다만, 멸균식육가공품 또는 건조 식육가공품 등은 실온에서 보관할 수 있다. 사.~너. (생략)	부칙(2008.00.00.)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특례) 이 고시의 따로 붙임 제1.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정 8. 보존 및 유통기준 바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에 불구하고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 〈따로 붙임〉 제1.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정 8. 보존 및 유통기준 가.~마. (현행과 같음) 바.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의 보존온도는 냉장 제품은 -2~10℃ (다만, 가금육 포장육 제품은 -2~5℃), 사.~너. (현행과 같음)
제2. (생략)	제2. (현행과 같음)
제3. 축산물 시험방법 I.~II. (생략) III. 일반시험법 1.~2. (생략) 3. 비타민류 가.~아. (생략) 〈신설〉 〈신설〉 자. 비타민의 미생물학적 분석법 4.~6. (생략) 7. 유해성금속 시험법 가. 시험용액의 조제 나. 측정 (1)~(2) (생략) 〈신설〉 8.~15. (생략) 〈신설〉	제3. (현행과 같음) I.~II. (현행과 같음) III. 일반시험법 1.~2. (현행과 같음) 3. 비타민류 가.~아. (현행과 같음) 자. 판토텐산 차. 비타민 B12 카. (현행의 자와 같음) 4.~6. (현행과 같음) 7. 유해성금속 시험법 가. 시험용액의 조제 나. 측정 (1)~(2) (현행과 같음) (3) ICP/MS법 8.~15. (현행과 같음) 16. 방사선조사 축산물의 검지법 가. 유전자코메트 분석법(스크리닝검사법) 나. 전자스핀공명법(Electron Spin Resonance, ESR) 다. 가스크로마토그래프/질량분석법(GC/MS) IV.~IX. (현행과 같음)
IV.~IX. (생략)	IV.~IX. (현행과 같음)